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3. 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2.25. 이봉수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2.26.
- 다. 상정일자 :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3.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봉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
- 나.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, 동물의 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(안 제5조~제7조)
- 라.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및 감독, 동물의 구조·보호 (안 제8조~제10조)
- 마. 보호동물의 공고, 동물보호 및 관리, 반환 등 (안 제11조~제13조)
- 바.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소요경비의 징수 (안 제14조, 제15조)
- 사.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·검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, 제17조)
- 아.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, 제19조)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(길고양이, 개 등)등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여 동물의 복지 향상을 꾀함은 물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필요한 사항을 「동물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- 동(同)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9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그 간 동물보호 관련법 제·개정 내용을 보면,
 - 1991년 축산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를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,
 - 200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와 동물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, 갈수록 동물학대 방법 등이 다양화 되고 잔혹해 지고 있으며 특히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

- 2011년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「동물보호법」이 전부 개정되었고,
 - 2012년 서울시도 「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」로 전부 개정하였으며, 현재 구로구외 49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단체 별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
- 동(同) 조례안은 2016.2.25.~2.29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, 「동물보호법」 및 타 관련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또한 ‘동물보호 조례’는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그 간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조례 없이 「동물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에 근거하여 ‘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(TNR)사업’ 및 ‘반려동물 등록제 사업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으나, 최근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소유자 증가와 더불어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바, 우리 구에서도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 등 동물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 등 동물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조례규정은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존중을 위한 적합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
- 다만, 현재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경기도 양주군 소재 위탁시설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, 우리 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관내 16개 동물병원이 연대한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여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바, 서울시 보조금을

받아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